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 장애인등록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2조, 제32조의3 및 제87조).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제2항).
 - 장애인등록증의 복사본·이미지파일,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등의 부정 사용에 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안 제32조제4항·제5항, 제32조의3 제5항 및 제87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함(안 제50조).
- 언어재활사 자격요건에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포함함(안 제72조의2, 부칙 제4조 및 제5조).
 -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안 제72조의2) 및 이 법 시행 이전에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종전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안 부칙 제4조)에게 2급 언어재활사 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함
 - 이 법 시행 당시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고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안 부칙 제5조).

II. 검토 의견

1. 장애인등록증 관련(안 제32조 및 제32조의3 등)

- 안 제32조제5항 및 제32조의3제5항은 다른 사람의 장애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안 제32조제5항은 장애인등록증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하는 ‘복사본 또는 이미지파일’(이하 “복사본등”)의 부정사용도 금지하고 있으나 안 제32조의3제5항은 장애인 등록 취소 후 ‘장애인등록증’의 사용만을 금지하고 있음.

복사본등의 사용도 장애인등록증의 적법한 사용으로 오인될 위험성이라는 점에서는 장애인등록증과 큰 차이가 없어 이를 장애인 등록 취소 후에 사용하는 것도 함께 금지하여야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으므로, 안 제32조의3제5항에도 복사본등의 사용금지가 포함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장애인 등록 및 취소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것이므로, 금지되는 행위가 ‘등록이 취소된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등’의 사용임을 명시하도록 수정함.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32조(장애인 등록) ⑤ 누구든지 <u>다른 사람 명의의 등록증 또는 그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u>	제32조(장애인 등록) ⑤ 누구든지 <u>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 파일(이하 “복사본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u>장애인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등록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u>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2. 언어재활사 시험 응시자격 관련(안 제72조의2 및 부칙 제4조)

가. 개정의 취지

- 안 제72조의2는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에게 언어재활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안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이전에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도 같은 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 본래 보건복지부는 원격대학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포함된다고 보아 언어재활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하여 왔음. 그러나 2024. 10. 31. 대법원이 현행 제72조의2의 ‘대학’에 ‘원격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¹⁾ 그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원격대학 학위 취득자의 언어재활사 시험 응시를 불허하고 있음.
- 안 제72조의2 및 부칙 제4조는 이와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격대학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언어재활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구 분	시험 응시자격		비 고
	현 행	개정안	
학위 취득예정자	부정	현장실습과목 이수 시 응시 가능	제72조의2
학위 취득자	부정*	종전 규정에 의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 시 인정	부칙 제4조

주: 구분은 법률 시행 시점 기준

* 판결 확정 전까지는 시험 응시자격 인정

-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미 원격대학 학위 취득자로서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점, 국가의 정책을 신뢰한 기존 학위 취득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의결하였음.²⁾

1)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두48268 판결. 동 판결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2023누49815 판결)은 원격대학에 충분한 실습·실기교육을 기대하기 어렵고, 원격대학에서의 실습 이수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없는 이상 제72조의2의 ‘대학’에 ‘원격대학’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나. 응시자격 인정 관련

- 현행 제72조의2에 규정된 ‘대학’에 ‘원격대학’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안 제72조의2가 공포·시행되기 전에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학위 취득 및 현장실습 등의 요건을 새로이 갖추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언어재활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게 됨.

안 부칙 제4조는 이처럼 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언어재활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 원격대학의 학위 취득자라도 그 판결 확정 전까지 인정되던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에 부합한다면 향후 언어재활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하려는 것임.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 및 별표 6의2에 따르면, 대학 등에서의 학위 취득자는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등의 실습·실기 수업을 이수하여야 언어재활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종래 보건복지부는 원격대학의 학위 취득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안 부칙 제4조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충분한 수준의 실습·실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도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 국가의 행위를 신뢰한 기존 학위 취득자의 이익과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일반대학 졸업생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학위 취득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실습·실기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³⁾

2) 제22대국회 제421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 (2025. 1. 22.), 71-87.

3) 법원행정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DD20232)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 기존 학위 취득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실습·실기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확정판결의 취지, 원격대학의 교육 현황, 추가적인 실습·실기 교육 이수의 현실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 판단됨.
- 기존 학위 취득자에게 추가적인 실습·실기 교육의 이수를 요구할 경우 그 교육의 내용은 안 제7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와 같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다. 시행일 관련

- 안 제72조의2제2항은 본문에서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2급 언어재활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데, 같은 호 단서에 따르면 원격대학 학위 취득자 중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한함.
그런데 안 부칙 제1조에 따라 안 제72조의2제2항제2호 본문은 공포한 날에 시행되는 반면, 같은 호 단서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 시행되므로, 동조 본문과 단서 각 규정의 시행일 사이에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이 발생할 경우 그 사람에게도 언어재활사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면이 있음.
- 안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여기서 ‘이 법’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안 제72조의2제2항제2호 본문의 시행 시에는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그 단서의 시행 시에는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안 제72조의2 제2항제2호 본문 및 단서의 시행일을 통일하고, 안 부칙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을 ‘안 제7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① (생 략) ② 언어재활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생 략) 2. 2급 언어재활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u>원격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u> ③ ~ ⑤ (생 략)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언어재활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개정안과 같음) 2. 2급 언어재활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u>대학원(원격대학에 두는 대학원에 한정한다)·원격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u> ③ ~ ⑤ (개정안과 같음)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개 정 안	수 정 의 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u> 1. <u>제10조의2제2항제2호, 제10조의2제2항제3호, 제50조제1항, 제72조의2제2항제1호나목, 제72조의2제2항제2호 본문, 제7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u> <u>공포한 날</u> 2. <u>제72조의2제2항제2호 단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u> 제4조(언어재활사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u>이 법 시행 이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에서 제72조의2제5항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제7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u>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u>다만, 제10조의2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제4조(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u>제7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원격대학에 두는 대학원에 한정한다)·원격대학에서 종전의 제72조의2제5항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u>

3. 기타

-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 은 정)